가정 예배 지침서

1647년 8월 24일, 에든버러 총회, 제10차 회기.

은밀하고 사적인 예배와 상호 덕성 함양을 위한 총회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법령; 그리고 가정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들을 견책하기 위한 법령.

총회는 성숙한 숙고 끝에, 경건을 배양하고 분열과 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규례와 지침을 승인하며, 각 회중의 목사와 치리 장로들이 이 지침이 준수되고 지켜지도록 특별히 유의하게 하고; 또한 노회와 지역 대회가 각기 관할 구역 안에서 이 지침이 합당하게 준수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확인하며, 이 문제에 있어 책망받거나 견책받아야 할 자로 밝혀진 이들을(그 허물의 경중에 따라) 책망하거나 견책하게 하기 위하여 임명한다. 그리고 이 지침들이 일부에게 있어 가정 예배라는 의무의 본질 자체를 습관적으로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무력하고 무익하게 되지 않도록, 총회는 나아가 목사와 치리 장로들이 각자 맡은 회중 안에서, 이 필요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관습이 있는 가정이 있는지 부지런히 조사하고 살피도록 요구하고 임명하며; 만일 그러한 가정이 발견되면, 그 가장은 먼저 사적으로 훈계를 받아 그 허물을 고치게 하고; 그럼에도 계속 그 안에 머문다면, 당회에 의하여 엄중하고 진지하게 책망을 받게 하며; 그 후에도 여전히 가정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 확인되면, 그 완고함으로 인하여 주의 만찬에서 정직되고 배제되게 하되, 이는 그가 회개할 때까지 마땅히 참여할 자격이 없는 자로 정당하게 간주되기 때문이다.

은밀하고 개인적인 예배와 상호 덕성 함양에 관한 총회의 지침, 경건을 배양하고, 하나 됨을 유지하며, 분열과 분파를 방지하기 위한 것.

이 땅에 큰 순전함으로 자비롭게 세워진 회중의 공적 예배 외에도, 각 사람의 은밀한 예배와 각 가정의 사적 예배를 촉진하고 확립하는 것이 합당하고 필요하니, 이는 나라의 개혁과 더불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경건의 신앙 고백과 능력이 증진되게 하려 함이다.

제1조 - 각 사람의 합당한 준비

그리고 첫째로, 은밀한 예배를 위하여, 각 사람이 따로 떨어져 홀로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것이 지극히 필요하니, 그 말할 수 없는 유익은 그것을 가장 많이 힘쓰는 자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이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특별한 방식으로 유지되고, 다른 모든 의무를 위한 합당한 준비가 얻어지는 방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기 다른 직임 안에 있는 목사들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아침과 저녁, 그리고 다른 때에도 이 의무를 행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마땅할 뿐 아니라, 가장들도 자신과 자기 아래 있는 모든 이들이 매일 이 일에 부지런하도록 돌보아야 한다.

제2조 - 가정에서의 통상적인 경건의 실천

가정이 그 목적을 위하여 모일 때, 마땅히 있어야 할 경건의 실천에 포함되는 통상적인 의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의 공적 형편과, 그 가정과 그 각 구성원의 현재 사정에 특별한 관련을 두고 드리는 기도와 찬양.

다음으로, 명료한 방식의 교리문답과 더불어 성경을 읽는 것이니, 이는 가장 단순한 이들의 이해력이 공적 규례로부터 유익을 얻는 데 더 잘 준비되게 하고, 성경이 낭독될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려 함이며; 아울러 모든 구성원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안에서 세우는 데 이바지하는 경건한 담화와, 가정 안에서 권위를 가진 이들이 정당한 이유로 행하는 훈계와 책망도 포함된다.

제3조 - 거룩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거룩한 성경을 해석하는 임무와 직분이 목회 소명의 한 부분으로서, 아무리 자격을 갖춘 자라도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로부터 정당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 외에는 어떤 곳에서도 스스로 떠맡아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읽을 줄 아는 자가 있는 모든 가정에서는 거룩한 성경을 통상적으로 가정에 낭독하여야 하며; 그 후에는 읽고 들은 바를 서로 의논하고 담화의 방식으로 선용하는 것이 권장할 만하다.

예를 들어, 낭독된 말씀에서 어떤 죄가 책망받는다면, 그것을 선용하여 온 가정이 그것에 대하여 조심하고 경계하게 할 수 있으며; 낭독되는 그 성경 본문에서 어떤 심판이 경고되거나 이미 내려진 것으로 언급된다면, 그것을 선용하여 온 가정이 그 죄를 초래한 죄를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같은 심판이나 더 심한 심판이 자기들에게 임할까 두려워하게 할 수 있으며; 끝으로, 어떤 의무가 요구되거나 어떤 약속 안에 위로가 제시된다면, 그것을 선용하여 명하신 의무를 행할 힘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제시된 위로를 적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다.

이 모든 일에 있어 가장이 주된 역할을 맡아야 하며, 가정의 어떤 구성원이라도 해결을 위한 질문이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제4조 - 가정 예배의 통상적인 시행

가장은 가정의 어떤 구성원도 가정 예배의 어떤 부분에서도 빠지지 않도록 돌보아야 하며; 가정 예배의 모든 부분을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일이 본래 가장에게 속하는 것임을 볼 때, 목사는 게으른 자들을 격려하고 연약한 자들을 훈련시켜 이 실천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다만 지체 있는 이들이 노회의 승인을 받은 이를 청하여 가정의 실천을 행하게 하는 것은 언제나 자유이다.

그리고 가장이 적합하지 않은 다른 가정들에서는, 그 가정에 항상 거주하며 목사와 당회의 승인을 받은 다른 이가 그 봉사에 쓰임 받을 수 있으니, 이 일에 목사와 당회는 노회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 목사가 하나님의 섭리로 어느 가정에 이르게 된다면,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정의 일부만을 예배를 위해 소집하고 나머지를 배제해서는 안 되며, 다만 이 부분들과 특별히 관련되어(그리스도인의 신중함으로 볼 때) 다른 이들에게 전할 필요가 없거나 전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 - 거짓된 소명들

특정한 소명이 없는 게으른 자나, 소명을 구실로 삼는 방랑자가 가정을 위하여, 혹은 가정을 상대로 예배를 행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되니, 이는 오류에 물든 자들이나 분열을 꾀하는 자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집집마다 들어가 어리석고 견고하지 못한 영혼들을 사로잡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제6조 - 각 가정은 외부인의 참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가정 예배에 있어서는, 각 가정이 다른 가정의 사람들을 요청하거나 초청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유지하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니, 다만 그들과 함께 묵고 있는 이들이나, 식사 중에 있는 이들, 혹은 어떤 정당한 경우에 그들과 함께 있게 된 이들은 예외로 한다.

제7조 - 여러 가정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승인되지 않는다

부패나 곤란의 시기에 여러 가정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어떤 결과와 열매를 가져왔든지(그러한 경우에는 달리는 용납되지 않을 많은 것들이 칭찬할 만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평화와 순전함으로 복 주신 지금은, (이 지침에서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여러 가정의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 것은 승인되지 않아야 하니, 이는 그것이 각 가정 스스로의 종교적 실천을 방해하고, 공적 사역을 해치며, 개별 회중의 가정들을 분열시키고, (시간이 지나면) 온 교회를 분열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육신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경건한 이들을 슬프게 하는 많은 실족거리가 생길 수 있다.

제8조 - 주의 날을 위한 지침

주의 날에는, 가정의 각 구성원이 따로, 그리고 온 가정이 함께, (사람의 마음을 예비하는 일이 그 손에 있으신) 주를 찾아 공예배를 위해 그들을 예비하시고 공적 규례를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구한 후에, 가장은 자기 아래 있는 모든 이들이 공예배에 참석하도록 힘써야 하니, 이는 그와 그들이 회중의 나머지와 함께할 수 있게 하려 함이다:

그리고 공예배가 끝나고 기도한 후에는, 그들이 들은 바를 되짚어보아야 하며; 그 후 남은 시간을 교리문답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영적 담화에 사용하거나, 혹은 (따로 물러나) 독서와 묵상과 은밀한 기도에 힘써야 하니, 이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확증하고 증진시켜, 공적 규례에서 얻은 유익이 유지되고 증진되며, 영생을 위하여 더욱 세워지게 하려 함이다.

제9조 -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모든 이는 하나님의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하니; 다만 무지하고 더 연약한 이들은 정해진 기도문으로 시작할 수 있으나,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느 정도 주어진 기도의 영을(자기 날마다의 필요를 따라) 스스로 안에서 일깨우는 데 더디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은밀한 기도에 더욱 열렬하고 빈번해야 하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소원을 품고 그들의 혀가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게 훈련되게 하려 함이다. 그리고 그동안, 더 큰 격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들을 묵상하고 사용하라.

그들은 자신들이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에 얼마나 합당하지 못하며, 그분의 위엄을 예배하기에 얼마나 무능한지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며;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의 영을 구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죄와 가정의 죄를 고백해야 하니, 그것들로 자신을 고발하고, 심판하고, 정죄하여, 마침내 영혼이 참된 겸비에 얼마간 이르게 해야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하여, 죄 사함을 위하여; 회개하고 믿고 근신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 은혜를 위하여;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며 그분 앞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부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그리고 자신들에게 베푸신 많은 자비,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분의 사랑과 복음의 빛에 대하여 감사를 드려야 한다.

그들은 그 순간(아침이든 저녁이든) 필요로 하는, 건강이나 질병, 형통이나 역경과 같은, 영적이며 현세적인 특별한 유익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를 위하여, 모든 개혁 교회들을 위하여,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상위 권세들, 왕의 존엄, 왕비와 그 자녀들을 위하여; 위정자들과 목사들과 자신들이 속한 회중의 온 몸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정당한 일로 부재중인 이웃들을 위하여, 집에 있는 이들을 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그 아들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여졌으며 그들이 구한 바가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으로 마칠 수 있다.

제10조 - 이러한 기도 실천의 중요성

이러한 실천은 큰 진실함으로, 지체 없이, 세상 사업의 모든 일이나 방해거리를 제쳐두고, 무신론자들과 세속적인 자들의 조롱을 개의치 아니하고, 이 땅에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최근 우리를 연단하신 그분의 엄중한 책망에 관하여 행해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지위가 높은 이들은(그리고 교회의 모든 장로들은) 자신과 자기 가정이 이 일에 부지런하도록 스스로를 격려해야 할 뿐 아니라, 자신들이 권세와 책임을 가진 다른 모든 가정에서도 그러한 실천이 양심적으로 행해지도록 효과적으로 이바지해야 한다.

제11조 - 가정에서의 특별한 경건의 실천

위에서 언급한 가정의 통상적인 의무들 외에도, 주께서 특별한 경우들(사적이든 공적이든)로 요구하실 때에는, 겸비와 감사의 특별한 의무들도 가정에서 신중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제12조 - 상호 권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도록 요구함을 볼 때; 그러므로 언제나, 특별히 세속성이 만연하고,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다른 이들이 자기들과 함께 같은 방탕의 극단으로 달려가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이 시대에는, 이 교회의 각 구성원은 교훈과 훈계와 책망을 통하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상호 덕성 함양의 의무들로 격려해야 하며; 서로 권면하여 경건치 아니함과 세상 정욕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이 현재 세상에서 경건하고 근신하며 의롭게 살게 하며; 마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로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들은, 예를 들어 어떤 재난이나 십자가나 큰 어려움 아래서 조언이나 위로를 구할 때, 혹은 범죄자가 사적인 훈계로 되찾아져야 할 때, 만일 그것이 효과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규례에 따라 한두 사람을 더하여 훈계에 동참시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정되게 하는 것과 같이, 신적 섭리가 제공하는 특별한 경우들에 따라 각각 이행되어야 한다.

제13조 - 권면할 때 합당한 도움들

지치거나 고통당하는 양심에 때에 맞는 한마디를 하는 것이 모든 이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경우에 있어 쉽사리 방법을 찾지 못하는 이는, 모든 통상적인 방편들, 사적이며 공적인 것들을 사용한 후에, 자기 자신의 목사나 어떤 경험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지도를 구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양심에 고통당하는 이가 그러한 처지에 있거나 그러한 성별이어서, 분별과 정숙함 혹은 추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경건하고 신중하며 비밀을 지킬 만한 벗이 그러한 담화에 함께 있어야 한다면, 그러한 벗이 함께 있는 것이 합당하다.

제14조 - 예외적인 상황을 위한 지침

여러 가정의 사람들이 각자의 특별한 소명으로 외지에 있다가, 혹은 어떤 필요한 경우로 인하여, 신적 섭리로 함께 모이게 될 때에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자기 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와 감사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행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들에 의하여 그것이 시행되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그들의 입에서 부패한 말이 나오지 않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유익한 선한 말만 나와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 모든 지침의 목적과 취지는 다름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 교회의 모든 목사와 회원들이 각자의 처소와 소명에 따라 경건의 능력과 실천을 배양하고 증진시키며 모든 경건치 아니함과 종교적 실천에 대한 조롱을 억제하는 것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적 실천이라는 이름과 구실 아래, 오류나 추문이나 분파나 공적 규례와 목사들에 대한 경멸이나 소홀함, 혹은 개인적 소명의 의무에 대한 태만, 혹은 성령이 아니라 육신에서 나와 진리와 평화에 반하는 다른 어떠한 악이라도 낳을 수 있는 모임이나 관행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 2026 Westminster 1647 :: https://westminster1647.com/ko/correo